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고 제2026-98호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절차 개선 및 방송의 보도·편성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법」 개정('25. 8. 26. 공포·시행)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편성위원회 등 규정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4)

- '편성책임자 미선임', '편성규약 미준수', '편성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미이행' 및 '추천을 받지 아니한 시청자위원 위촉' 등에 대해 과태료 기준 금액 설정

나.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방송사(안 제64조제6항)

- 기존 시청자위원회 운영 방송사업자(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라디오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추가

다. '정보공개 의무 방송사업자' 인용조문 변경(안 제65조제1항)

-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공개 대상 의무사업자의 인용조문을 개정 「방송법」에 따른 관련 조문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mcc.go.kr>)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
- 전자우편 : jaerm@korea.kr
- 팩스 : 02-2110-013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전화 02-2110-1415/1449, 팩스 02-2110-01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